

대한상의 브리프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장 성녹영



제92호 2019년 3월 18일



최근 산업융합법과 정보통신융합법에서 규제샌드박스 첫 허용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샌드박스 4법 중 4월 실시를 앞두고 있는 지역특구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합니다. [외부 필진 칼럼은 대한상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규제자유특구 주요 내용과 시사점

규제샌드박스 4법이 통과됐다. 산업융합촉진법과 정보통신융합법은 올해 1월 17일부터 시행됐고, 금융혁신법과 지역특구법은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2월 말 기준, 산업부는 산업융합 샌드박스로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 유전자 맞춤형 건강서비스, 버스 디지털광고, 전기차 충전용 콘센트 등 4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과기부도 정보통신융합 샌드박스로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서비스, 공공기관 고지서의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서비스 등 3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오는 4월 17일부터는 산업융합법과 정보통신융합법의 뒤를 이어 규제자유특구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역특구법이 시행된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특구법은 규제샌드박스를 기본으로 지방에 '규제자유특구'를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규제자유특구는 업종제한 없이 혁신성장관련 모든 분야에 규제샌드박스를 전면적으로 적용해 '한국형 규제샌드박스'라 불린다. 이러한 전면적 적용은 세계 최초이기 때문이다. 영국,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들이 핀테크 등 금융 분야에 한정해 도입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 도입으로 기업은 신사업 진출의 기회를 갖게 되고, 지역은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나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샌드박스의 개념과 도입배경

규제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란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노는 모래놀이터처럼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동안 또는 일정 지역 내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제도이다.



[규제샌드박스 4법 비교]

공통점	지역특구법	산업융합법·정보통신법·금융혁신법		
	규제샌드박스 적용	좌 동		
차이점	▪ 메뉴판식 규제특례 적용	×	×	×
	▪ 시·도지사가 신청	기업이 신청	좌 동	좌 동
	▪ 비수도권 대상	전국 대상	좌 동	좌 동
	▪ 세제·재정 지원	×	×	×

대한상의 브리프

대한상공회의소가 회원님께 드리는 최신 경제정보

새로운 제품, 서비스에 대해 규제샌드박스 적용을 신청하면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도 심사를 거쳐 시범 사업, 임시허가 등으로 규제를 면제·유예한다.

이 제도는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16년 영국이 처음 도입했고, 문재인 정부도 규제개혁 혁신방안 중 하나로 채택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선 기존 제도와 규제개혁 조치로는 기술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주요 내용

지역특구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에 적용되는 지역중심 제도다. 지역의 혁신성장사업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일정한 면적·공간을 특구로 지정해 사업활성화에 필요한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세제·재정지원 등이 가능토록 한다.

또한 수도권 쏠림 현상 등 지역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절차 간소화 등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재정·세제 지원도 추가하였다.

① 규제자유특구 신설

지역특구법 개정으로 규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특구가 신설된다. 적용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이다. 해당 시·도지사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특구계획을 수립하고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혁신적인 규제특례가 적용되며, 재정·세제·각종 부담금 감면 등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②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

비수도권지역의 시·도지사는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자유특구 지

정을 신청해야 한다. 민간기업 등은 해당 시·도지사에게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수도권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민간기업 등의 제안을 수용해야 한다.

규제자유특구계획에는 특구의 지정 필요성, 혁신사업의 필요성과 육성방안, 규제특례 등을 적용받는 사업자, 특구 내에 적용되는 규제특례와 그 필요성 등을 포함해야 한다.

③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규제혁신 3종 세트의 적용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획기적인 규제완화 조치가 적용된다.

첫째, 규제자유특구에는 미리 준비된 기존 법령의 201개의 규제가 유예 또는 면제되어 적용된다. 특히 규제프리존법안이 병합되면서 규제프리존법안에 포함된 산업특례 35개가 반영됐다.



[기존 특화특구와 규제특례 비교]

	기존 특화특구	규제 자유특구
메뉴판식 특례	128개 적용	201개 적용
규제혁신 3종 세트 (샌드박스)	미적용	적용 ①규제 신속확인 ②임시허가 ③실증특례

둘째, 규제혁신 3종 세트(규제샌드박스)가 적용된다. 특구 안의 기업들은 규제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신사업 관련한 허가 등의 필요 여부를 확인 요청하면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받을 수 있다(규제 신속확인).

대한상의 브리프

대한상공회의소가 회원님께 드리는 최신 경제정보

또한, 신제품이나 서비스의 시험 검증을 하고자 할 때 일정 기간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실증을 할 수 있게 된다(실증특례).

아울러 신제품·서비스의 안전성이나 기술 검증이 끝났으나, 허가 기준이 없거나 맞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여 출시가 안 될 경우에 임시로 판매허가를 받을 수 있다(임시허가).

임시허가가 필요한 기업들은 관계부처 검토 및 특구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시허가(최대 2년, 1회 연장 가능, 법령 정비 시까지 기간 연장)를 받을 수 있다.

④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보호장치 마련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규정했다. 국가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구 안에서 지역혁신성장사업과 전략사업을 허용하되,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실증특례나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사업자는 사업진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피해에 대비하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했다.

시사점

규제개혁에 목말라 있던 기업들에게 규제샌드박스 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도입되어도 잘 활용이 되지 않는다면 효과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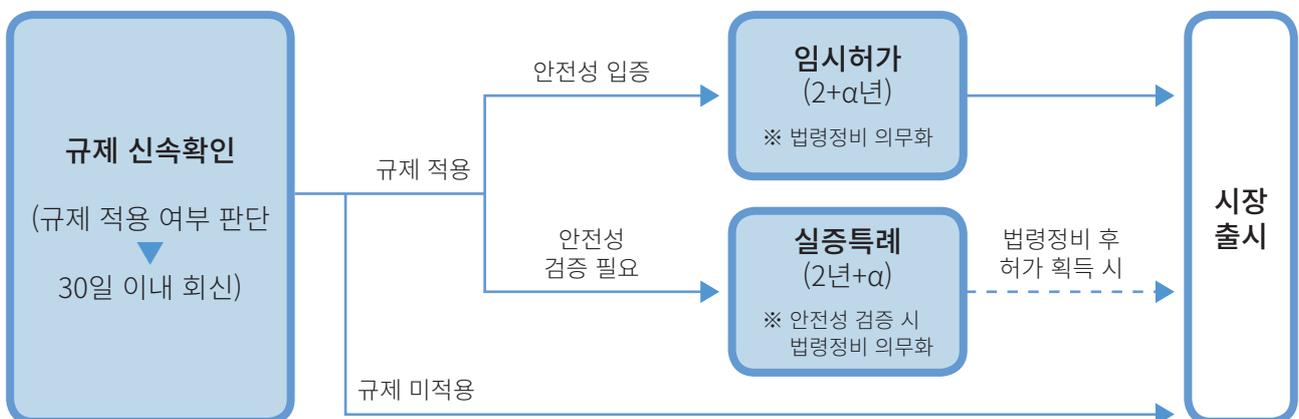
특구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민간기업의 제안을 적극 수용토록 되어 있으므로, 기업들은 지역실정에 맞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사업계획을 적극 제안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 민간수요에 기반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은 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규제혁신 3종 세트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그동안 규제 여부에 명확한 답변을 회피했던 정부와 지자체는 이제는 30일 이내에 반드시 회신토록 되었다. 그동안 법령에 막혀 진행이 안 되었던 사업도 이제는 법개정을 기다리지 않고도 할 수 있게 되었다.

중기부, 지자체, 지방중기청에도 상담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애로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규제혁신 3종 세트 적용 절차]



[참고 1] 규제샌드박스 승인의 주요 사례

규제 신속확인



자율주행 스마트 농업기계

▶ (현황) 농지 외 일반도로 주행 가능 여부와 주행 가능 시 보험가입 의무 여부 등 관련규제 확인 필요

※ 중기부에 문의하면 관련부처에 통보하여 규제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여 원스톱으로 통보

실증특례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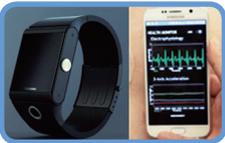


유전자분석(DTC) 및 건강증진 서비스

▶ (현황)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 검사기관이 분석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항목이 12개로 제한(생명윤리법 및 동법고시)

※ 일정 지역·기간·실증범위를 한정해 現 규제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동 서비스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실증특례②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 관리서비스

▶ (현황) 웨어러블 기기가 측정한 환자상태에 따라 의사가 내원을 안내하거나 타 의료기관 방문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분명

※ 의사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착용한 환자로부터 전송받은 심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내원 안내를 하거나 1·2차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 안내를 하는 것 허용

임시허가①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 (현황)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 등록요건에 전기차충전기만 규정되어, 과금형 콘센트를 활용한 충전사업 불가(전기사업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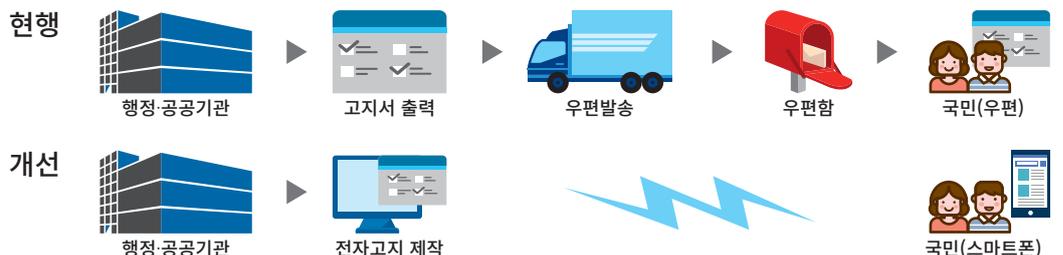
※ 과금형 콘센트가 사용하는 전력량의 정확한 계측가능성 등의 성능검증 후 시장출시 허용하고, 관련제도 개선 추진

임시허가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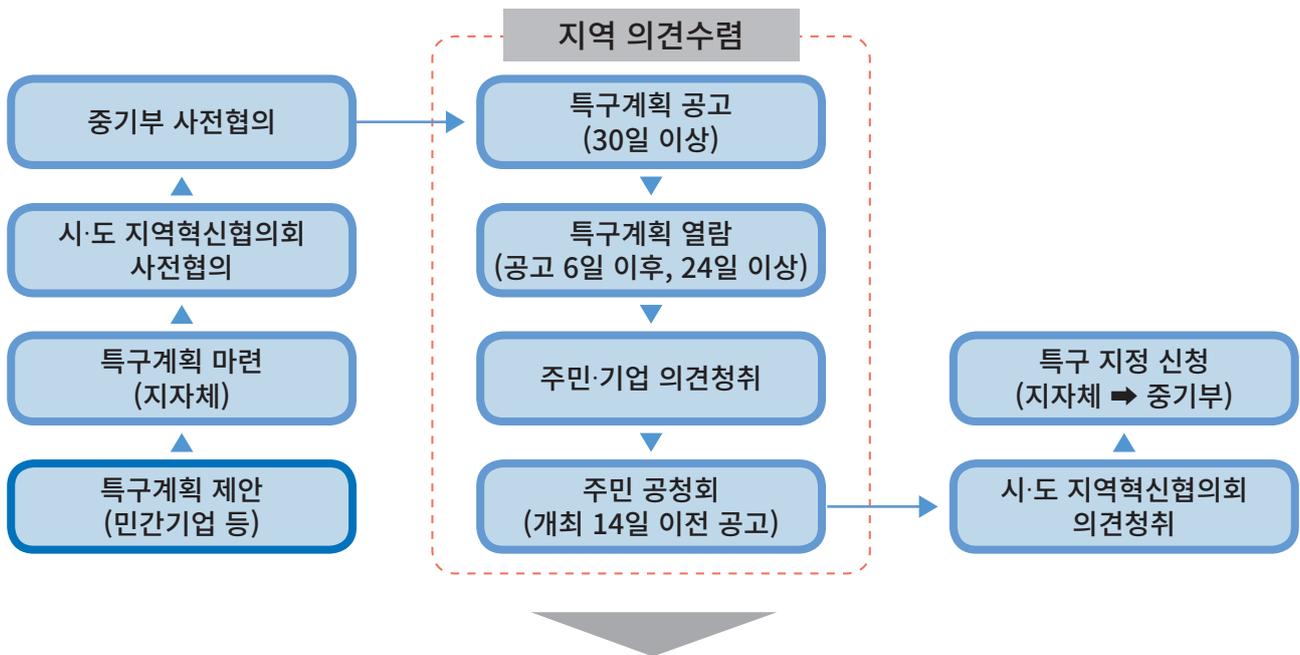
메신저·문자 기반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 (현황) 관련고지상 본인확인기관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해 이용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해,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번호를 연계정보로 일괄 변환하는 것이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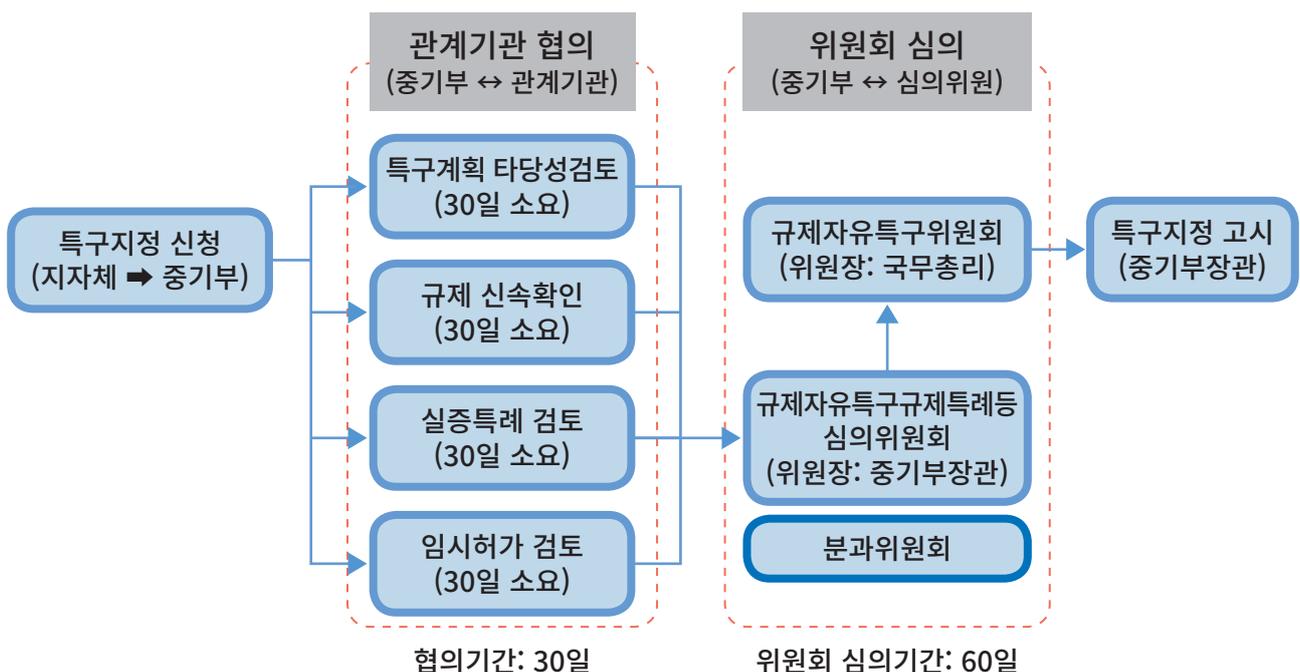
※ 주민번호 수집·처리 법적근거를 보유한 행정·공공기관의 요청에 한하여,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번호를 연계정보(CI)로 일괄 변환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



[참고 2] 광역시·도의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 절차



[참고 3] 규제자유특구계획 승인 및 특구지정 절차



국내·외 경제지표

2019년 3월 18일 기준

1. 국내·외 경제성장률

(단위: %)

	2017	2018 ^(E)	IMF		OECD	
			2019 ^(P)	2020 ^(P)	2019 ^(P)	2020 ^(P)
한국	3.1	2.8	2.6	2.8	2.8	2.9
세계	3.7	3.7	3.7	3.7	3.3	3.7
미국	2.2	2.9	2.5	1.8	2.6	2.2
중국	6.9	6.6	6.2	6.2	6.2	6.0
일본	1.7	1.1	0.9	0.3	0.8	0.7
EU	2.4	2.0	1.9	1.7	1.0	1.2

* E : 잠정치(Estimate) / P : 예상치(Projections)

2. 환율·유가¹⁾

(단위: 원(환율), 달러(유가))

	2016	2017	2018	'18.10월	11월	12월	'19.1월	2월
원/달러	1,161	1,131	1,100	1,131	1,129	1,123	1,122	1,122
원/엔(100엔)	1,068	1,009	996	1,003	996	999	1,030	1,016
원/위안	174.4	167.5	166.4	163.3	162.7	162.9	164.9	166.4
원/유로	1,283	1,276	1,299	1,300	1,282	1,277	1,282	1,272
유가(Dubai)	53.8	53.2	69.7	79.4	65.6	52.9	57.3	64.5

3. 산업지표

(단위: %(전년동기대비))

	2016	2017	2018	'18.10월	11월	12월	'19.1월	2월
산업생산	3.0	2.5	1.4	7.6	0.2	0.4	0.6	-
소매판매	3.9	1.9	4.2	5.1	1.0	3.0	4.0	-
설비투자	-1.3	14.1	-3.7	10.2	-9.4	-14.9	-16.6	-
수출	-5.9	15.8	5.4	22.5	3.6	-1.7	-5.9	-11.1
수입	-6.9	17.8	11.9	28.1	11.4	1.1	-1.7	-12.6

1) 환율은 월 평균 기준, 유가는 기말 기준